

	보 도 자 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배포일	2018년 11월 8일 (목) (총 3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담당부서</td><td>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홍보위</td></tr> <tr> <td>담당자</td><td>김미애 제 1저자 (010-9978-7851) 최정희 책임저자 (010-6254-7360) 한만용 홍보이사 (010-8339-0727)</td></tr> </table>	담당부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홍보위	담당자	김미애 제 1저자 (010-9978-7851) 최정희 책임저자 (010-6254-7360) 한만용 홍보이사 (010-8339-0727)
담당부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홍보위					
담당자	김미애 제 1저자 (010-9978-7851) 최정희 책임저자 (010-6254-7360) 한만용 홍보이사 (010-8339-0727)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42%에서 과일 채소류에 알레르기 반응 - 구강알레르기 증후군이 흔히 발생한다 -

국내 알레르기 비염은 20-30%에서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빈도의 유병율을 보인다. 최근에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42%에서 과일 또는 채소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구강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란 성인에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이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꽃가루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식품 항원을 가지고 있는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섭취할 때, 닿는 부위인 입술, 입 안, 입천장, 혀, 목 안 등이 가렵고 붓는 증상을 보인다. 대부분 식품에 노출되고 5분 이내 증상이 생기지만, 일부는 30분 이상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로 생으로 먹을 때만 증상이 나타나고, 익히면 알레르기성분이 파괴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진행된 국내연구에 따르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648명(평균나이 26.1세, 범위 5-64세) 중 41.7%에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보였으며, 이는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Research (AAIR)지 11월호에 실리었다.

사과, 복숭아, 키위 순으로 높은 빈도

- 꽃가루와 교차항원성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 -

주로 봄철 나무 꽃가루 (자작나무, 참나무)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과, 복숭아, 키위, 자두, 호두, 땅콩, 밤, 대추, 토란, 배, 체리, 수박, 잣, 살구, 메론, 파인애플, 토마토에 구강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가을철에 날리는 잡초 (쑥, 돼지풀, 환삼덩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키위, 사과, 파인애플, 복숭아, 수박, 포도, 토마토와 같은 식품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에는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토란, 인삼, 들깻잎, 도라지, 쑥갓, 더덕, 칡, 연근 등과 같은 다양한 채소들에도 구강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꽃가루 알레르기는 주로 봄철 나무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나 가을철 잡초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비염, 결막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 때 원인 식품에 노출되면 더 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9%에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증상이

- 원인식품을 피하거나 완전히 익혀먹어야-

구강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43%는 이와 함께 두드러기와 같은 전신 피부 증상이 동반되어 있었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계 증상도 20%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구강 알레르기 증상과 함께 아나필락시스를 동반한 환자도 8.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중 생과일이나 생채소 섭취 후 구강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원인 식품을 피해야 하며, 과일이나 채소를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전신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 하며,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물을 상비하여야 한다.